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보조 등〉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0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2.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보조	9
3. 재난 및 감염병 등 발생시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손실 보전	15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5. 26.

(3) 회 부 일 : 2025. 5.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

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사항</u>,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 절차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등기에-----.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38조1)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재

-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조사하는 제도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지능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며(「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관계 사업, 지역 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최근 5년간 연평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는 31건, 면제 규모는 17.4조원임([표 1]).

[표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2020~2024년)

(단위: 건, 조원)

연도	건수	규모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2024	39	17.4

자료: 기획재정부

-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의료서비스 및 재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병원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편익이 산정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²⁾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원이 보다 원활하게 신설·증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한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률적인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최근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및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음.³⁾

□ 한편, 동 개정안 외에도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 [표 2]와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김진환·정백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건사회연구 44(3), 2024. 등

3) 면제연도: 2021년

근거규정: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표 2]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의 법안 발의 현황 (2025. 7. 현재)

대표발의 (발의일)	구분	의안 번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주요 내용
김윤의원 (‘24.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162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진숙의원 (‘24.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1968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9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 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김선민의원 (‘24.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28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의 설립 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2229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문금주의원 (‘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76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신축이전, 증축 포함) 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박희승의원 (‘25.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7300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01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 하에서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함.

또한, 정부가 경제성 외에도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개선(2021년 11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 신설, 지역보건 사업 추진효과, 감염병 치료 등 경제성편익 발굴·추가

□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개별법보다는 동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대해 포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 및 유사 사례 법제화로의 과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국가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시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타 분야 및 지역에 미칠 과급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무분별한 외형적 확장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인 의료공급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2.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보조

가. 개정안의 내용

- 현재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5)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 ① ----- ----- ----- ----- ----- -----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인구감소 변화를 겪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통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나아가 지역격차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⁶⁾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보건의료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 2025년 7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총 9개소임.

[표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해당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총 89지역)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총 9개소)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대구의료원(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의료원(삼척시) 영월의료원(영월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공주의료원(공주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의료원(남원시) 진안군의료원(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의료원(강진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의료원(안동시) 울진군의료원(울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

6)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를 겪는 지자체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지자체의 자치재정 악화와 지역 격차 심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2020. 2.).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의 주체로(제4조제1항7),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으며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의 부담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제17조제1항·제2항8).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경비

* 국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 일부(지방의료원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주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지역 보건의료 여건의 개선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적절성은 위치한 지역 뿐만 아니라 경영현황, 타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한 예로 지방의료원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당기순이익(흑자)을 기록한 지방의료원 7개소 중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3개소를 차지하며,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지방의료원 8개소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3개소임([참고] 별첨).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동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참고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외에도 「공공보건의료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서도 의료서비스·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9개소)은 모두 지역적으로 의료취약지⁹⁾, 성장축진지역¹⁰⁾에 해당하거나, 지역 책임의료기관¹¹⁾에 포함됨([표 4]).

9) 근거: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 및 「인구감소지역법」 제2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 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0)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축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0조(성장축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축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 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 4]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역 의료기관 지원
관련법률 적용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 (총 9개소)	공공보건의료법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법	책임의료기관(지역)	성장촉진지역
		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대구(1)	대구의료원(서구)		○	
강원(2)	삼척의료원(삼척시)	○	○	○
	영월의료원(영월군)	○	○	○
충남(1)	공주의료원(공주시)	○	○	
전북(2)	남원의료원(남원시)	○	○	○
	진안군의료원(진안군)	○		○
전남(1)	강진의료원(강진군)	○		○
경북(2)	안동의료원(안동시)		○	○
	울진군의료원(울진군)	○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를 바탕으로 작성

□ 한편, 동 개정안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 [표 5]와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1) 근거: 「공공보건의료법」 제14조의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표 5]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취지의
법안 발의 현황 (2025. 7. 현재)

대표발의 (발의일)	구분	의안 번호	운영비 지원 관련 주요 내용
김원이의원 (’24.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48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박희승의원 (’25.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01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지원 중임.

- 다만 「지방의료원법」 제17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비 지원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동법 제17조의 취지, 재정지원의 효과성 측면 등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응급실 가동률, 민간의료기관 치료가 어려운 질환군·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등 공익적 수행역량과 실적을 감안한 평가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우수 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재난 및 감염병 등 발생시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손실 보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u><신설></u>	제17조(보조금 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재난이나 감염병이 발생하여 국가 시책상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의료기관이 수행하게 될 경우, 전용·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병상을 비우고 일반환자를 받지 못함에 따른 손실, 상황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손실¹²⁾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이와 같은 손실을 보전하여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우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지방의료원이 감염병·재난에 대한 의료적 대응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법률상 설립 목적 및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법」 제7조제1항¹³⁾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사업에는 감염병·재난 환자의 진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타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및 감염병 관련 지원이 포함되며,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12) 감염병 등으로 병상을 비우게 되어 환자가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면 상황종료 후에도 기존 의료기관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감염병 등에 전담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일반환자가 이전보다 유입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종료되어도 일정한 회복기간 동안 기대진료수익보다 낮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 1. 28.>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또한,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제3호14)에 따라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님.
- 지방의료원은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법」 제17조제1항·제2항15) 및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16) 등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의료인력 확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지방의료원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감염병환자 진료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손실보상 규정은 현행법과의 중복성 또는 타 감염병관리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손실보상 관련규정]

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36조17)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기관이 감염병 예방·환자 진료를 위해 설치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②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환자 진료 등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18)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 진료·의료기관 폐쇄로 발생한 손실 등을 해당기관에 보상하여야 함.

- 동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시도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2020년 2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감염병관리기관에 비용 지원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짐.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총 3,810억원(2020~2022년)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8조 7,319억원(2020~2024년)¹⁹⁾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이하 생략)

19) 대상: 620개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109개소를 포함하며, 공공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 35개소가 포함됨)

※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

내용: 병상손실 및 일반환자 감소 손실, 회복기 손실(최대 1년), 의료부대사업 등 포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병원 중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손실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국가 재난이나 감염병 사태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것은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에 의해 응당 수행해야 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에만 경영상의 손실을 보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의 역차별을 발생시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도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손실(적자) 현황 (2020~2024회계연도 결산)
-------------	--

：흑자('24년, 3년평균, 5년평균에 대해 표기)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기관명 (인구감소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평균 (‘22~’24)	5년평균 (‘20~’24)
1	서울	서울의료원	4,051	4,396	-26,889	-37,955	-19,203	-28,016	-15,120
2	부산	부산의료원	3,608	29,025	-3,686	-17,850	-17,948	-13,161	-1,370
3	대구	대구의료원*	4,482	22,476	13,482	-11,670	-10,408	-2,865	3,672
4	인천	인천의료원	13,712	20,461	6,317	-11,370	-6,851	-3,968	4,454
5	인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139	-227	-327	-24	-220	-190	-132
6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923	9,636	2,626	-11,388	-4,502	-4,421	-341
7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315	2,705	-3,378	-9,273	-8,417	-7,023	-3,210
8	경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3,518	20,913	446	-10,037	-6,033	-5,208	1,761
9	경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4,962	25,005	10,072	-4,210	3,497	3,120	7,865
10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4,109	10,889	1,755	-10,991	-4,560	-4,599	240
11	경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1,239	10,406	1,701	-9,576	-5,962	-4,612	-438
12	경기	성남시의료원	-7,980	27,659	1,259	-23,701	4,966	-5,825	441
13	강원	강릉의료원	-876	10,410	2,070	-5,179	-1,634	-1,581	958
14	강원	속초의료원	-1,394	10,771	2,140	-6,168	-4,941	-2,990	82
15	강원	원주의료원	3,664	5,692	8,671	4,985	2,257	5,304	5,054
16	강원	삼척의료원*	224	5,397	-143	-4,401	226	-1,439	261
17	강원	영월의료원*	365	-2,892	124	-3,682	-1,323	-1,627	-1,482
18	충북	청주의료원	-2,234	6,914	-2,800	-15,473	-14,473	-10,915	-5,613
19	충북	충주의료원	-2,173	4,505	10,638	-11,273	-6,070	-2,235	-875
20	충남	천안의료원	-824	15,075	-215	-10,640	-6,952	-5,936	-711
21	충남	공주의료원*	-1,234	13,222	585	-8,494	-4,326	-4,078	-49
22	충남	서산의료원	-1,844	5,832	6,338	-6,784	-2,040	-829	300
23	충남	홍성의료원	-4,357	20,045	3,289	-12,076	-3,756	-4,181	629
24	전북	군산의료원	2,816	14,790	7,623	-8,422	-7,480	-2,760	1,865
25	전북	남원의료원*	-6,017	13,058	4,413	-13,927	-4,932	-4,815	-1,481
26	전북	진안군의료원*	-1,004	-330	77	-80	408	135	-186
27	전남	순천의료원	388	6,352	4,555	-1,825	-3,658	-309	1,162
28	전남	강진의료원*	-743	4,619	1,220	-3,522	-2,053	-1,452	-96
29	전남	목포시의료원	1,387	9,660	7,658	-1,951	-3,256	817	2,700
30	경북	김천의료원	1,142	2,416	6,574	-5,317	1,715	991	1,306
31	경북	포항의료원	919	16,549	6,857	-4,384	-2,027	149	3,583
32	경북	안동의료원*	-1,038	14,186	8,726	-3,224	-4,973	176	2,735
33	경북	울진군의료원*	1,416	52	-693	52	2,068	476	579
34	경남	마산의료원	4,794	13,445	464	-10,566	-4,792	-4,965	669
35	제주	제주의료원	352	2,144	4,560	-5,006	-5,535	-1,994	-697
36	제주	서귀포의료원	-1,618	5,566	1,310	-12,012	-7,186	-5,963	-2,788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